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적인 냄비나 주전자등 다양한 재질의 용기를 통해 물을 끓이거나 액상의 음식을 조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례로써 용기가 냄비인 것을 예를들어 설명한다.

즉, 도 1에서와 같이 본체(10)의 내부에는 물이나 액상의 음식물이 수납될 수 있도록 공간부(11)가 형성되고, 이 공간부(11)를 선택적으로 밀폐 및 개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커버(12)가 결합된다.

이때 커버(12)를 결합시키는 것은 좀더 빠르게 음식을 조리하거나 기타 조리시 발생하는 향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본체(10)는 가열수단(20) 예컨대 히터가 가스렌지의 상면에 안착되어 이로부터 열원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가열용기에 있어서는, 물을 끓이거나 액상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액체가 외부로 배출되어 본체(10)의 표면을 따라 바닥면으로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열원 상면으로 낙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와같이 액체가 열원 상면으로 낙하함에 있어서는, 특히 가스렌지등과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소화(消火)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가스의 누출이 발생되어 폭발사고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는 최근에 매우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많은 인명의 손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이와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체 내부로 부터 유출되는 액체가 본체의 바닥면을 통해 가열수단으로 낙하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열용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따른 가열용기는, 가열수단의 상면에 안착되어 이로부터 발생된 열원을 공급받으며, 내부에 물이나 액상의 음식물이 수납되도록 공간부가 형성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공간부를 선택적으로 개방 및 밀폐시키도록 결합되는 커버로 이루어진 가열용기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바닥면은, 외측으로 부터 평탄한 평탄부 이 평탄면으로 부터 중심 내측을 향해 소정곡률 반경으로 경사진 경사부로 이루어진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한 특징은, 상기 바닥면의 평탄부상에는 소정깊이의 요홈이 더 형성된 것에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가열용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열용기의 단면도이고, 도 3은 다른 실시예를 보인 단면도이다.

이에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가열용기는, 가열수단(20)의 상면에 안착되어 이로부터 발생된 열원을 공급받으며, 내부에 물이나 액상의 음식물이 수납되도록 공간부(110)가 형성된 본체(100)를 구비한다.

본체(100)의 상면에는 내부의 공간부(110)를 선택적으로 개방 및 밀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커버(cover;200)가 결합된다.

그리고 공간부(110) 내부의 액체가 본체(100)의 표면을 따라 바닥면(120)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닥면(120)은, 외측은 평탄한 평탄부(121)를 이루고 있으며, 이 평탄부(121)로 부터 중심을 향해 소정곡률 반경으로 오목하게 경사진 경사부(122)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용기는, 가열수단(20)에 의해 물이나 액상의 음식물이 가열될 때 발생하는 액체가 본체(100)의 표면을 따라 바닥면(120)을 향해 안내되면, 바닥면(120)의 표면 장력 등에 의해 중심부로 안내되게 되지만, 본원에서와 같이 바닥면(120)의 중심부가 내측으로 오목하게 경사진 경사부(122)를 이루고 있어 액체가 중심으로 유입되지 않고 바닥면(120)의 평탄부(121)에서 낙하하게 된다.

즉, 가열수단(20)으로 직접 낙하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한편, 도 2에서와 같이 바닥면(120)의 평탄부(121)에 소정깊이로 요홈(123)을 형성하게 되면, 액체의 일부가 요홈(123)으로 유입됨으로써 액체의 바닥면(120) 중심부로의 이동을 좀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술한 실시예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하나의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본 고안의 적용범위는 이와같은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사상의 범주내에서 적절하게 변경한 것이다. 예를들어 본 고안의 실시예는 가열용기로서 냄비를 사용한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전자나 기타 물이나 액상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어떠한 용기에도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은 당연자라면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고안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가열용기에 의하면, 본체의 바닥면에 형성된 경사부와 요홈을 통해 가열되는 액체가 본체의 외측면을 따라 바닥면 중심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액체의 낙하에 의한 가열수단의 소화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그리고 이에따른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열수단의 상면에 안착되어 이로 부터 발생된 열원을 공급받으며, 내부에 물이나 액상의 음식물이 수납되도록 공간부가 형성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공간부를 선택적으로 개방 및 밀폐시키도록 결합되는 커버로 이루어진 가열용기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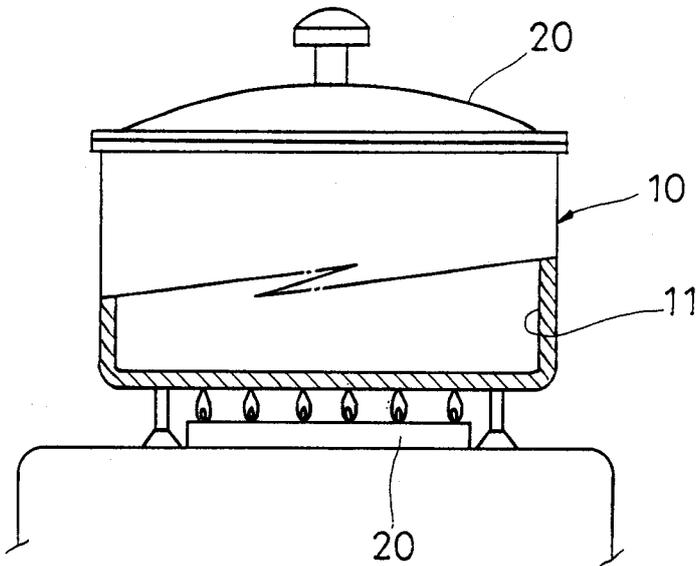
상기 본체의 바닥면은, 외측으로 부터 평탄한 평탄부 이 평탄면으로부터 중심 내측을 향해 소정곡률 반경으로 경사진 경사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용기.

청구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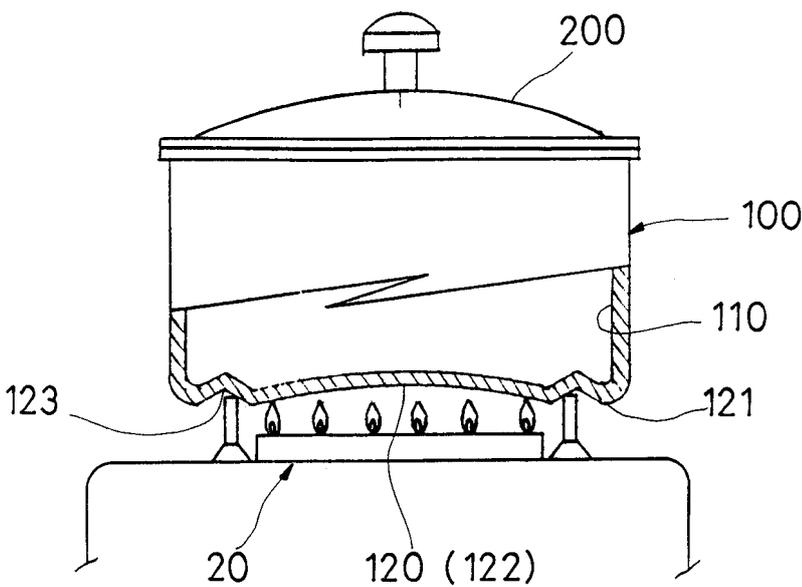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의 평탄부상에는 소정깊이의 요홈이 더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열용기.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